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1

독일

이 경 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1

독일

이 경 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I.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개요	4
II.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기준 분석	7
1.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 피보험자 범위)	7
1) 의무보험(: Versicherungspflicht)	8
2) 가입면제/적용제외	15
3) 임의가입자(: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16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인적 적용기준	18
1) 가입대상 : 인적 적용범위	18
2) 가입방법 :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	20
3) 이전보험기간(Vorversicherungszeit)	21
3. 가입제한	22





III.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규정 분석	24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기간	24
1) 실업급여액의 지급수준	24
2) 실업급여 지급기간	24
2. 실업급여 수급요건 규정분석	25
1) 실업급여의 청구권자	25
2) 실업의 인정요건	26
3)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	27
4) 실업급여 성립요건(Anwartschaftszeit)의 충족	28
3. 수급 중 소득인정여부 및 범위	29
IV. 독일 고용보험료 산정 규정 분석	30
V. 시사점	32
참고 / 독일 고용보험법 주요 규정	35
: 사회법전 제3편-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개정 17. Juli 2017 (BGBl. I S. 2581)	

I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개요

- 독일의 사회보험법체계는 기본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구분되어 왔음
 -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
 - 이 경우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보험료의 50%를 납부
 - 자영업자(Selbstständige)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방식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
 -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100% 부담
- 기본적으로 명확하던 독일의 사회보험법체계는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많은 특별 규정에 의하여 점차 세분화되기 시작
- 특히 자영업자를 위하여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복잡한 상황에 당면
 -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들은 저임금으로 법정 연금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
 - 임의 가입한 건강보험료 역시 비현실적으로 높게 측정되었다고 평가됨
 - 게다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여야만 했음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는 불합리한 면이 지적
 - 저소득의 자영업자들은 고령화 사회(Überalterung der Gesellschaft)를 대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유일한 직업계층이 되었기 때문임

- 이에 반해 고소득의 근로자들은 사회로부터 면책되었고, 더 나아가 순수하게 노후 준비에 소득 지향적이었고 보험료에 있어 “호의적(günstig)”이라는 평가를 받음¹⁾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독일의 서비스노동조합연맹(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은 자신들의 활동 목표를 불평등(Unrecht)한 사회보험제도의 종식과 새로운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음
- 그 결과 고객과 의뢰인(Auftraggeber) 역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였음. 초기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① 자유 예술가(Künstlerinnen) 및 저널리스트(Publizisten), ② 모든 자영업자 및 ③ 근로자의 세 가지 범위로 구분되었음
- 사적보험시장의 근로자의 실업 대비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 한계
 - 독일은 사회보장영역에서는 시장 실패(Marktversagen)를 경험
 - 특히, 정보의 불평등과 행동 리스크로 인하여 사적보험시장은 실패된 것으로 평가
 -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도 공적실업보험은 국가의 주도하에 존재
- 사회보험의 체계에서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확실한 보호장치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들과 매우 위험한 실업위기에 놓인 자들 간의 견고한 균형(Ausgleich)을 이루고자 함²⁾
- 실업보험의 근본적인 시행은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임

1) Zwei Systeme der Sozialversicherung, www.mediafon.net/ratgeber_haupttext.php3?id=40eaa71b16b76&view=&si=5b3a0b0d87e5f&lang=1 (2018.07.02. 검색).

2) Raffelhüsche, Bernd/Moog, Stefan/Vatter, Johannes, Fehlfinanzierung in der deutschen Sozialversicherung, Freiburg 2011, S. 65.

- 독일 사회법전 제3편의 범명은 “실업급여(Arbeitslosengeld)”가 아니라, “고용촉진(Arbeitsförderung)”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전 제3편은 실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는 금전 보상과 함께 고용촉진, 노동활동 및 직업소개(Arbeitsvermittlung) 등 무수히 많은 활동을 보장함. 이점에 있어서 실업급여와 실업위험에 대한 관계는 건강보험과 질병의 관계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업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목적은 고용촉진의 의미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살펴봐야 함
- 직업소개와 고용촉진은 부적합한 실업급여의 청구를 예방하고, 불법노동자를 줄이고 그리고 인적 자원(Humankapital)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음³⁾
- 연방노동청(Bundesagentur für Arbeit)이 근로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조치는 복잡해지고 있음
- 실제로 노동시장정책(Arbeitsmarktpolitik)은 지속적인 세금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연방노동청의 교육시스템(Bildungssystem)임. 그런데, 교육과 훈련은 연방노동청의 주요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한계
- 그러나 수범자들은 일반적으로 연방노동청이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 왜냐하면 조치의 이행은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실업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비용을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이행과 비용에 대한 연방노동청의 보상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비판된 바 있음⁴⁾

3) Sachverständigenrat (2005), Die Chancen nutzen - Reformen mutig voran bringen, Jahresgutachten 2005/2006, Sachverständigenrat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Situation, Wiesbaden 2005, S. 55.

4) Raffelhüsche, Bernd/Moog, a.a.O., S. 65.

II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기준 분석

1. 고용보험법의 인적 적용범위(피보험자 범위)

- 독일 사회법전 제3편(Sozialgesetzbuch III, 또는 이하 ‘고용보험법’)의 법명은 “실업급여(Arbeitslosengeld)”가 아니라, “고용촉진(Arbeitsförderung)”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전 제3편은 실업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독일 고용보험은 법정보험(보험가입의무; 사회법전 제3편 제2장)을 법정(이하 ‘의무’) 보험관계(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와 신청에 의한(이하 ‘임의’) 보험관계(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로 구분
- 독일 고용보험(사회법전 제3편 고용촉진)의 가입방식은 의무가입(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제26조)과 임의가입(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로 볼 수 있다. 그 외 적용제외(사회법전 제3편 제27조, 제28조)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독일 사회법전 제3편의 실업보험을 적용받는 (; ‘고용보험법관계’가 성립 가능한) 인적 범위는 의무 가입자로서 취업자(법 제25조)와 기타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법 제26조) 그리고 임의 가입자(법 제28a조)임. 적용 제외되는 자는 적용제외 취업자(제27조)와 기타 적용제외 자(제28조)가 있음

< 독일 고용보험법 인적 적용범위 개요 >

고용보험 법관계	가입 방식	인적 적용 범위	내용
의무보험 관계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의무 가입	취업자 (§25SGB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 개념: 임금 또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 • 취업자 범위: 취업자, 직업교육생 등 * 저소득 근로자 제외
		기타 가입의무자 (§26(1) SGB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관계 있는 자: 취업자 이외 법률관계에서 피고용관계가 형성 * 직업지원급여 수급청소년 • 취업관계 없는 자: 법기술적 의미에서 취업관계는 없는 피보험자 * 국복무·대체복무자
	소득대체보상관계 가입의무자 (§26(2) SGB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법상 소득보장급여 수급기간 중 가입의무자 등 * 소득감소 완전연금 수급자 	
의의보험 관계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가입 면제/ 적용 제외	가입면제 취업자 (§27SGB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사회보험법의 적용제외 자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사, 저소득자 • 법정보험피보험자이나 특별한 노동시장관계로 가입 면제 * 주식회사이사, 재택근무자 등
		기타 적용제외 자 (§28SGB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 청구 연령 • 노동능력감소로 직무 불능 • 국외 사회보험적용
의의보험 관계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임의 가입	임의가입자 (§28a SGB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최소 15시간의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 • 제3국, 유럽경제공동체의 체약국 등에서 주당 최소 15시간 근로하는 자 • 연방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청구한 자 • 추가(계속)직업교육을 받는 자

1) 의무보험(: Versicherungspflicht)

- 사회법전 제3편 제24조 제1항은 강제가입의 인적범위를 취업자와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의무 가입되는 피보험자로 구분하여 규정함. 전자는 사회법전 제3편 제25조에, 후자는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에 상세하게 규정

(1) 취업자(: Beschäftigte)

- 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제1항은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인 취업자에 관하여 규정
- 피보험자는 임금(: 근로수당(Arbeitsentgelt)을 목적으로 고용되거나 또는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고용된(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고용) 자를 말함(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제1항 제1문)
 - 다만 저소득 근로자(Geringfügige Beschäftigte)는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음⁵⁾
-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에 따른 직업교육계약(Berufsausbildungsvertrag)의 범위 내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생과 복수학습프로그램(Duale Studiengänge) 참가자 역시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임(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제1항 제2문)

(2) 기타 가입의무자(기타 의무보험:Sonstige Versicherungspflichtige)

가. 취업관계가 있는 자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제1항 취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가입의무가 있는 피보험자를 열거
- 법률관계에서 피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 의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자들을 규정
 - ①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사회법전 제9편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참여를 위한 지원급여를 받는 청소년(Jugendliche)
 - ②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고용을 목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 중인 자

5) Die gesetzliche Arbeitslosenversicherung, NEURAX WIKI(02.01.2018), S. 1.

나. 취업관계가 없는 자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는 법률기술적인 의미에서 취업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자들을 열거

- ① 병역법(Wehrpflichtgesetz), 군인법 제58b조 또는 대체복무법(Zivildienstgesetz)에 따른 군복무 내지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자로서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기간동안 취업자로서 의무보험의(가입의무를 지는)피보험자가 아닌 자(제2호),
- ② 형집행법(Strafvollzugsgesetz)에 따른 작업상여금, 직업훈련수당 또는 손실보상금(Ausfallentschädigung)을 받는 수용자(제4호),
- ③ 종교 단체 내지 이와 유사한 종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단체 또는 유사한 종교 공동체 내에서 봉사를 위하여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을 받는 자(제5호)들이 해당. 이와 같은 사람들의 업무는 고용인과 취업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법정보험관계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음⁶⁾

(3) 소득대체보상(Einkommensersatzleistung)과 관계된 가입의무자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은 소득대체보상으로 인하여 의무보험의 가입의무를 지는 피보험자들을 열거
- 동 조항은 특정 사회법상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형성된 소득보상에 대한 관계를 고용보험의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의무보험으로서 간주하고자 함⁷⁾
- 고용촉진(Arbeitsförderung)을 장려하고, 이전에 형성된 고용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입법취지⁸⁾

6) Gagel, SGBII/SGB III, SGB III § 26 Rn. 1.

7) Gagel, a.a.O., SGB III § 26 Rn. 21.

8) Berchtold, in: Knickrehm/Kreikebohm/Waltermann (Hrsg.), SGB III, § 26 Rn. 8; Gagel, a.a.O., SGB III § 26 Rn. 1.

① 공법상의 수급자

- 공법상의 수급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부여
- 출산수당(Mutterschaftsgeld), 질병보조금(Krankengeld), 장애보조금(Versorgungskrankengeld), 상해보조금(Verletztengeld), 의료재활치료기관으로부터 과도기적 보조금(Übergangsgeld)을 받는 자(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1호)가 해당

② 사보험회사와 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적 보험회사와 정액보험(Krankentagegeld)을 체결한 자를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
- 동 조항은 대다수의 취업자가 자신의 건강보험을 사적 보험회사로 변경하는 현상에 의하여 도입⁹⁾
-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자는 사회법전 제3편 고용촉진법(고용보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이에 대해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취업자가 사보험회사와 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피보험자로서 가입의무를 규정¹⁰⁾

③ 장기 및 혈액 기증자에 대한 급여 수급자

- 보험회사, 연방 지원기관(Beihilfeträger), 질병발생시 비용을 부담하는 기타 연방 및 주의 공적 기관 등이 이식법(Transplantationsgesetz)¹¹⁾ 제8조 및 제8a조에 의하여 실행된 장기, 재능 및 혈액 기증에 의하여 근로소득상실에 놓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들 수급자는 법정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됨(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2a호)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2a호는 2012년 7월 31일 이식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 이식법 제9조는 혈액기증자를 위한 법정보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입법권자는 장기와 혈액기증자의 동등한 대우를 달성하고자 함¹²⁾

9) Gagel, a.a.O., SGB III § 26 Rn. 25.

10) Gagel, a.a.O., SGB III § 26 Rn. 25.

11) BGBl. I S. 1601.

12) Gesetz zur Stärkung der Versorgung in der Krankenversicherung vom 16.7.2015, BGBl I S. 1211.

- 사회법전 제5편 제44a조는 장기, 재능 기부(Gewerbespender) 및 혈액 기증자에게 질병수당(Krankengeld)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 따라서 이들이 기부에 의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사회법전 제3편 제2조 제2a호에 의하여 실업수당의 범위에 산입¹³⁾

④ 요양지원금(Pflegeunterstützungsgeld) 수급자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2b호는 요양지원금 수령인에 대하여 규정. 동 조항에 따라서 이들이 요양기관(Pflegekasse), 보험회사, 지원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직위(Stelle) 또는 공무원의 관리자(Dienstherr)로부터 요양지원금을 받는 경우 법정 의무보험에 가입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2b호는 가족, 요양 및 직업의 보다 향상된 합의(Vereinbarkeit)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¹⁴⁾ 사회법전 제11편 제44a조 제3항의 전제요건 하에 요양지원금을 청구. 요양지원금의 취득(Bezug)은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의 그 밖에 전제요건 하에 법정 실업보험에 해당¹⁵⁾

⑤ 완전 소득감소연금(Erwerbsminderungsrente)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연금 수령자에 대하여 규정. 다만, 이 사람은 완전 소득감소에 의하여 법정 연금보험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지급받아야 함
- 법정의무보험과 완전 소득감소연금의 관계는 사회보험상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것임. 동 문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였으나 즉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됨¹⁶⁾
- 완전 소득감소연금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기간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기간은 법정 실업보험이 추구하는 목적에 적합하게 보호되어야 함
- 반면, 수입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 사회법전 제3편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자유가입자(Versicherungsfreiheit)에 해당(자유가입자에 대하여는 이하 논의)¹⁷⁾

13) BR-Drs. 17/9773, S. 35; BT-Drs. 18/4095, S. 141.

14) BGBl. I 2462.

15) BT-Drs. 18/3124.

16) BT-Drs. 14/6944, S. 26.

17) Gagel, a.a.O., SGB III § 26 Rn. 26.

⑥ 육아기간동안 법정 의무보험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a조¹⁸⁾에 따라서 현재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는 법정 의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됨
 - * 출산 후 3년간은 연금보험법상 급여를 수급
- 동 규정은 실업수당보장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sschutz)상 피보험자가 근로활동이 종료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보험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¹⁹⁾
- 노동시장정책기구의 개혁에 관한 법(JobAQTIVG)²⁰⁾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육아기간은 법정 기간의 확장에 관한 구성요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님
- 오히려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a조는 헌법상 거부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정(의무) 고용보험을 의도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 있음
- 가족을 장려(Förderung)하는 경우 신설된 규정 안에서 입법권자는 확장된 재량형성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임²¹⁾

18)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a조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현재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 다만,

1. 자녀양육 이전에 직접적으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였거나 또는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대체보상을 신청하였어야 하며 그리고
2. 자녀와 함께 내국에 일상적으로 머무르거나 또는 내국에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또는 제65조 내지 연방아동수당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적용 없이 소득세법 또는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아동수당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제1문은 단지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자녀를 양육하는 자,
2. 지속적으로 별거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또는
3. 지속적으로 별거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의 자녀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법정실업보험의 피보험자는 법정연금보험의 권리 규정에 따라서 오직 직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사회법전 제6편 제56조 제2항).

19) BR-Drs. 14/6944, S. 30.

20) Gesetz zur Reform der arbeitsmarktpolitischen Instrumente(Job-AQTIV-Gesetz) vom 10. Dezember 2001, (BGBl. I, S. 3443 ff.).

21) LSG NRW vom 15.08.2007 - L 12 AL 55/06; SchHLSG vom 31.10.2008 - L 3 AL 14/08.

-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한 법정 고용(실업)보험은 독일고용보험법상 계속성을 가지고 있음
-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동능력을 중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함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1항의 피보험자에 대한 전제조건 즉 피고용관계가 형성된 피보험자 예컨대 청소년과 유사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법정 고용보험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하는 입법취지
- 따라서 육아기간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법정 보험의무와 보험료 지급과 같은 보험일반 원칙을 준수
- 그 결과 육아기간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서 개정 전의 법보다 본질적으로 더 보호받게 됨²²⁾

⑦ 간병기간 중 간병인에 대한 법정의무 고용보험

- 가족 구성원을 간병하는 자는 다음 요건에 따라 법정 실업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b항)
- 첫째, 간병인은 최소 사회법전 제9편에서 요구하는 간병 2등급에 해당하는 자, 사회법전 제11편에 따라서 간병보험등급 또는 사회법전 제12편에 따라서 간병을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내지 다른 법률규정에 따라서 동일한 등급에 해당되는 자를 간병해야 함
- 둘째, 간병인은 주당 최소 10시간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며, 주당 최소 2일 동안 자신의 가족을 간병해야 함
- 마지막으로 간병인이 직접적으로 가족을 간병하기 이전에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였거나 또는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지속적인 실업수당을 청구하였어야 함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b항은 법정의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한 규정이며, 간병보험의 구조적인 지속발전에 관한 법률²³⁾에 의하여 도입됨
- 이 때 취업자는 간병시간법(Pflegezeitgesetz) 제3조에 따라서 간병을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의 간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업무수행(Arbeitsleistung)이 면제되어야 함

22) Gagel, a.a.O., SGB III § 26 Rn. 30.

23) BGBl. I S. 874.

- 사회법전 제3편 제26조 제2b항은 취업자가 6개월간 지속적인 간병활동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법정 실업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규정²⁴⁾

2) 가입면제/적용제외

(1) 가입면제 취업자 (Versicherungsfreie Beschäftigte)

- 사회법전 제3편 제25조가 취업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의무가입 고용보험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법전 제3편 제27조는 적용제외 내지 면제되는 자들에 대하여 설명. 적용제외(면제) 되는 인적범위는 두 개의 범위로 구분

① 적용제외 : 일반적인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

- 직업 또는 사회보험법상 특별한 지위를 형성하는 자(사회법전 제3편 제27조 제1항)
: 공무원, 판사, 군인, 공법상 종교 단체로 인정된 성직자, 사립학교 교사 및 종교단체의 회원, 부목사, 집사 및 이와 유사한 자들
- 저소득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되지 않는 자(사회법전 제3편 제27조 제2항)
: 저소득자에 해당하는 자
- 인적범위를 규정하는데 있어 독일 입법권자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사회법전 제5편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의 본문을 유사하게 사용²⁵⁾

② 가입면제 : 기타 사회보험분야에서 언제나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되지만, 특별한 노동시장관계의 배경(Gründe)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은 면제되는 자(사회법전 제3편 제27조 제1항 제5호, 제3항, 제4항, 제5항)²⁶⁾

24) BR-Drs. 16/7439, S. 94.

25) Gagel, a.a.O., SGB III § 27 Rn. 1.

26) Gagel, a.a.O., SGB III § 27 Rn. 1.

: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일시적인 취업자, 재택근무자(Heimarbeiter), 직업교육을 위한 외국 취업자, 시장, 부시장, 공적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학생 및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취업관계를 형성한 자 등이 해당

(2) 기타 적용제외 자(:Sonstige versicherungsfreie Personen)

■ 기타 적용제외 되는 자는

- ① 사회법전 제6권에 규정된 기초고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도달한 자
- ② 노동능력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 ③ 완전한 생계능력감소로 연금의 청구와 비교 가능한 외국기관의 이행이 인정된 시점에 적용 제외

■ 적용제외는 고용 또는 사회급여 관계로 인하여(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형성

- 적용제외 자는 동 기간 동안 법정 연금보험으로부터 완전한 생계능력감소로 인하여 연금을 청구 가능

3) 임의가입자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1) 인적 적용범위

-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재해보험과 달리, 1942년 7월 1일 이후 독일에서 실업을 보장하기 위한 임의적 (신청)방식의 고용보험은 부재²⁷⁾

27) Timme, in: Hauck/Noftz, SGBIII, § 28a Rn. 2.

■ 2006년 2월 1일 노동시장에서 현대 서비스에 관한 제3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는 3개의 다양한 인적 범위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가능성을 제시²⁸⁾

■ 임의가입 할 수 있는 인적 범위(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 신청에 의해 법정(의무)보험관계가 가능한 인적 범위

① 주당 최소 15시간을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제1항 제2호)

② 제3국, 유럽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의 계약국 또는 스위스 이외의 국가에서 주당 최소 15시간을 근무하는 자(제1항 제3호)

③ 연방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Bundeselterngehd- und Elternzeitgesetz) 제15조에 따라서 육아휴직(Elternzeit)을 청구한 자(제1항 제4호)

④ 추가(계속)교육을 받는 자(제1항 제5호)

■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의가입 고용보험은 노동시장 개혁과 함께 도입되어, 최초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신청에 의한 고용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 포함. 동시에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는 고용기회법(Beschäftigungschancengesetz)²⁹⁾으로서 표기된 개정법에 의하여 새로이 재구성

■ 해고가능성(Kündigungsmöglichkeit) 및 휴가규정(Ruhensregelung) 외에 필수적인 이 전보험기간(Vorversicherungszeit) 역시 자발적 실업보험의 전제요건에 포함³⁰⁾

28) Gagel, in: Sabine Knickrehm, Olaf Deinert(Hrsg.), SGBII/SGBIII Grundsicherung und Arbeitsförderungen, Band I, 2018 München, SGB III § 28a Rn. 1.

29) BGBl. 2010 I S. 1417.

30) BR-Drs, 17/1945, S. 11 ff.

-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및 제4항은 2011년 12월 20일에 효력이 발생한 노동시장으로 편입기회(Eingliederungschance)의 개선에 관한 법률³¹⁾과 함께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졌다.³²⁾

(2) 이전보험기간(Vorversicherungszeit)

- 임의가입 고용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 1) 영업활동 또는 고용(수용)활동의 개시 전, 육아휴직 내지 추가교육의 개시 이전,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12개월 동안 법정(의무) 고용보험관계를 형성했거나(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1호)
- 2) 영업활동 또는 고용(수용)활동의 개시, 육아휴직 또는 추가교육의 개시 전에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소득대체급여를 받은 자임(제2호)

- 필수적인 이전보험기간 및 연결고리는 과거에 이미 보험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³³⁾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인적 적용기준

1) 가입대상 : 인적 적용범위

- 독일의 고용보험법제에서 임의적 신청으로 가입하여 실업을 보호받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었음

31) Gesetz zur Verbesserung der Eingliederungschancen am Arbeitsmarkt, BGBl. S. 2854 ff.

32) Gagel, in: Sabine Knickrehm, Olaf Deinert(Hrsg.), SGBII/SGBIII Grundsicherung und Arbeitsförderungen, Band I, 2018 München, SGB III § 28a Rn. 1.

33) BR-Drs. 15/1515, S. 78; BR-Drs. 17/1945, S. 14.

-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은 2006년 2월 1일 노동시장에서 현대 서비스에 관한 제3법률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에서 3개의 다양한 인적 범위가 가입할 수 있게 됨
 -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규정이 사회법전 제3편 제28a에 규정
 - 해당 규정의 자들에게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행법은 신청에 의한 임의 가입대상을 4개의 인적적용 범위로 분류 :
 - ① 주당 최소 15시간을 자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제2호), ② 제3국, 유럽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의 체약국 또는 스위스 이외 국가에서 주당 최소 15시간을 근무한 자(제3호), ③ 연방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Bundeselterngehd- und Elternzeitgesetz) 제15조에 따라서 육아휴직(Elternzeit)을 청구한 자(제4호) ④ (추가·계속적)직업교육생(제5호)

- 독일 입법권자는 자신들의 생계(Existenz)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고자 함.³⁴⁾ 이와 관련하여 입법권자는 자영업활동에 대한 새로운 지침서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³⁵⁾

- 자영업자에 대한 임의적 고용보험은 자영업자가 주당 최소 15시간의 자영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 여기서 자영업의 범위(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1문 제2호)는 단지 자영활동을 포함
 - 소송이 없는 연구자가 연구비를 지원받는 활동은 포함³⁶⁾
 - 가족구성원을 도와주는 취업활동은 자영업에 해당되지 않음³⁷⁾

34) Brand, SGB III, 7. Aufl., 2015, § 28a Rn. 4.

35) BR-Drs. 15/1515, S. 78.

36) HessLSG 18.8.2017 - L 7 AL 36/16.

37) Brand, SGB III, 7. Aufl., 2015, § 28a Rn. 4.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규정(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1항 제2호)은 사회법전 제3편 제138조 제3항 또는 고용노동청의 행정실무(Verwaltungspraxis)와 관계 :³⁸⁾
 - 독일 입법권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에 대한 자발적인 진입가능성을 제공
 - 왜냐하면 입법권자는 자영업자들을 과거 보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간주하였고,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의 가입특권을 자영업자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³⁹⁾

2) 가입방법 : 신청에 의한 임의가입

-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에 규정된 임의가입 고용보험은 신청에 의하여 가능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법관계는 신청자격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신청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법정 피보험자가 되는 것
 - 임의가입 신청서는 영업활동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사회보험법제3편제28a조제3항)
 - 임의보험의 해지는 최초 5년의 경과 후 허용, 해지기간은 역월(달력월)의 종료 시부터 3개월(사회보험법제3편제28a조제5항)
- 동 규정과 관련하여 비교 가능한 법률규정은 단지 연금보험법에서 찾을 수 있음
 - 사회법전 제6편 제4조는 신청에 의하여 법정(의무)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인적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
 -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의 의미는 모든 구성요건의 충족 시 법정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신청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뜻함⁴⁰⁾

38) Gagel, a.a.O., SGB III § 28a Rn. 8.

39) GSG Berlin 24.11.2008 - S. 70 AL 745/05; BT-Drs. 15/1515/ S. 78

40) Gagel, in: Sabine Knickrehm, Olaf Deinert(Hrsg.), a.a.O., SGB III § 28a Rn. 2.

- 신청에 의하여 법정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사회법전 제3편 제27조에 규정된 가입면제 (적용제외)자가 아니라, 사회법전 제3편 제25조 및 제26조의 의미의 법정(의무)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가 됨⁴¹⁾

3) 이전보험기간(Vorversicherungszeit)

- 신청에 의한 임의보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신청자의 요건을 법상 규정(사회법제3편 제28a조제2항)

-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의 형성요건으로서 신청자는

① 영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의 개시 전, 육아휴직 내지 추가교육의 개시 이전,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12개월 동안 법정(의무) 고용보험관계를 형성(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1호)한 자

-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1문 제1호와 관련하여 비연속적 가입기간은 임의가입 하는데 있어 영향 받지 않음⁴²⁾
- 필수적인 이전보험기간 및 연결구성요건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과거에 보험공동체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임⁴³⁾
- 보험기간의 산정은 연속 또는 합산 가능

② 또는 영업활동 또는 취업활동의 개시, 육아휴직 또는 추가교육의 개시 전에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소득대체급여를 수급(사회법3편 제28a조제2호)한 자

- 예컨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

41) Voelzke, in: Schulin, HS-RV § 16 Rn. 204.

42) BR-Drs. 15/1515, S. 78.

43) BR-Drs. 15/1515, S. 78; BR-Drs. 17/1945, S. 14.

- ③ 의무가입자(제25조, 제26조)나 가입면제(적용제외; 제27조, 제28조)가 아니어야 함(동법 동조제2호단서)
 - 예컨대 취업자, 공무원 등이 아니어야 함
 - 다만 저소득 취업자는 배제하지 않음

3. 가입제한

-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2문은 임의가입 고용보험의 남용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⁴⁴⁾
- 임의가입 신청인이 이미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1항 제1문 제2호(자영업활동)에 따른 피보험자였고 직업활동을 2번 중단한 후, 중단기간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한 때에는 신청에 의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1항 제1문 제2호)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2문)
- 과거 고용보험의 가입이력만으로 자영업자에게 요구하는 이전보험기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⁴⁵⁾
 - 자영업활동에 근거한 임의가입자로서(제1항제1문제2호) 해당 영업활동을 2번 중단하였고, 중단기간 동안 실업급여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하여 실업급여를 2회 수급 받은 경우, 자영업자로서 임의보험에 신청이 제한

44) BR-Drs. 17/1945, S. 14.

45) BSG 30.3.2011 - B 12 AL 1/10 R SozR 4-4300 § 28a Nr. 2.

- 사회법전 제3편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가입이 면제된 자(가입면제/적용제외)는 이전보험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고용관계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 고용 보험에 임의 가입하지 못함⁴⁶⁾

■ 가입제한(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2문)과 관계된 판례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사회법원(LSG Bln-Bbg)은 연방노동청이 2번의 실업급여를 신청한 자에게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 제2항 제2문을 근거로 신청인의 청구를 배제시킨 결정에 대하여 헌법위헌(Verfassungswidrigkeit)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 법원은 최초 입권권자가 임의가입 고용보험의 신청의 요건을 도입한 것은 부적합한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⁴⁷⁾

46) BSG 2.3.2010 - B 12 AL 1/09 R SozR 4-4300 § 28a Nr. 1 = NZS 2011, 75 ff.

47) LSG Bln-Bbg, 1.12.2014 - L 14 AL 134, 13; Az. der Nichtzulassungsbeschwerde B 11 AL 2/15 B).

III

독일 자영업자에 대한 급여규정 분석

1.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기간

1) 실업급여액의 지급수준

- 최소 한명의 자녀를 가진 수급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수급자의 동거인이 최소 한 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 과세의무 67%(사회법전 제3편 제149조 제1호),
- 다른 일반 수급자의 경우 일괄 계산된 순임금의 60%(사회법전 제3편 제149조 제2호)의 금액이 지급됨
 -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수혜자가 지난해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주당 총수입에 따름
 - 급여는 평균적으로 수급자가 고용관계의 종료 전년도에 벌어들인 총수입으로 평가
- 실업이 시작되기 직전년도에 150일 미만 실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평가기간은 2년으로 연장됨
 - 평가기간이 2년으로 확장된 평가기준 내에서 실업급여의 청구가 최소 150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가급여는 고정된 고용급여로 계산됨(사회법전 제3편 제152조 제1항)
 - 평가급여는 보상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초로 이용됨(사회법전 제3편 제153조)
 - 보상급여는 일괄적인 순 임금을 나타냄

2) 실업급여 지급기간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장 된 1년의 최소가입기간과 수급자의 연령의 범위 내에서 법정 보험관계의 존속기간에 따라서 결정(사회법전 제3편 제147조 제1항)

- 기본청구기간은 최소 12개월의 법정보험관계에서 6개월까지 지급되며, 가입기간의 연수에 따라서 최장 24개월까지 연장됨(사회법전 제3편 제147조 제2항)
- 12개월의 지급기간은 기본청구기간으로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그러나 실업신고의 시점이 50세 55세 또는 58세의 노년층 근로자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5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됨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기간>

가입(법정보험관계 유지) 총 기간 (개월)	연령 기준(세)	급여지급기간 (개월)
12		6
16		8
20		10
24		12
30	50세	15
36	55세	18
48	58세	24

2. 실업급여 수급요건 규정분석

1) 실업급여의 청구권자

■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사회법전 제3편 제137조 제1항)

- ① 실업상태인 자로서
- ②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
- ③ 실업급여 성립요건을 충족한 자

2) 실업의 인정요건

■ 실업 (사회법전 제138조)

- ① 실업은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함(사회법전 제138조 제1항 제1호)
 - 고용관계가 일시적이거나 또는 중단된 경우에도 실업에 해당
 - 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및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승인에 있어 중요함
 - 이전 고용관계가 법률상 아직 형성되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음
 - 합의에 의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해고보호절차(Kündigungsschutzprozess)를 실행하는 경우에도 실업상태는 존재
 - 주당 15시간 미만의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업상태에 해당(사회법전 제3편 제138조 제3항)
 - 그러나 여러 개의 직업(예, 자영업자, 간병인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함께 산정됨
- ② 스스로 실업상태를 끝마치려고 노력하여야 함(사회법전 제138조 제1항 제2호)
 - 구직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제3자를 통한 중재에서 협력하여야 함
 - 고용지원센터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함
- ③ 고용지원센터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함(사회법전 제138조 제1항 제3호)
 - 중재의 이용 가능한 상태는 고용 능력(사회법전 제138조 제5항 제1호, 제2호)과 고용 준비(사회법전 제138조 제5항 제3호, 제4호)를 말함
 - 수급자가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직무의 경우 중재노력이 존재함(사회법전 제138조 제5항 제3호)

■ 자영업자는 실업 또는 직업교육의 경우 실업급여 청구 가능

■ 자영업자의 실업상태 및 실업급여

- 자영업자의 사회법전 제3편의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은 고용(실업)보험관계의 가입기간이 고려됨
- 자발적(신청에 의한/임의) 고용(실업)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한 증명서를 자신의 관할 노동청에 신청할 수 있음⁴⁸⁾
 - 임의(신청에 의한/임의) 고용(실업)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실업상태가 되는 경우 실업수당의 금액은 가상(fiktiv) 소득금액(Arbeitsentgelt)에 따라서 산정
 - 다만 피보험자가 2년간 실업상태에 있는 동안 최소 150일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자발적(신청에 의한/임의) 고용(실업)보험으로부터 수급 받지 않았어야 함
- 가상 소득금액의 산정은 우선적으로 실업에 따라 발생된 연방노동청의 직업소개 및 노동능력에 필요한 자격등급*에 따라서 산정⁴⁹⁾

* 2017년 연방노동청은 월 실업수당에 대한 자격등급(Qualifikationsstufen)을 ① 전문대학(Fachhochschule)(Q-그룹 1): 1,494.30 유로, ② 직업전문학교(Fachschule)/마스터(Master)(Q-그룹 2): 1,295.10 유로, ③ 직업교육 수료(Q-그룹 3): 1,086.00 유로 및 ④ 무교육(Q-그룹 4): 846.00 유로로 산정

3)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

■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청구권자가 됨(사회법전 제3편 제137조 제1항)

- ① 수급자는 개인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사회법전 제3편 제141조 제1항)

48) Bundesagentur für Arbeit, a.a.O., BA GR 21 - § 28a, 11.2017, S. 5.

49) Bundesagentur für Arbeit, a.a.O., BA GR 21 - § 28a, 11.2017, S. 5.

② 사회법전 제3편 제141조 제2항에 따라서 신고는 다음의 경우 소멸 됨

- 실업이 6주 이상 중지된 경우
- 무상의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 자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가족구성원을 간병하는 경우
- (단기, 저임금 등) 모든 고용관계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되어야 함 → 발생 가능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함
- 수급자가 새로운 직무를 형성하는 경우 즉시 고용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의 청구권 상실 내지 초과 실업급여금의 반환 발생
- 실업신고가 소멸된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실업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함
- 실업신고의무와 구직 신고는 다름

4) 실업급여 성립요건(Anwartschaftszeit)의 충족

- 실업급여의 성립요건(Anwartschaftszeit)이 충족(사회법전 제3편 제137조 제1항 제3호)되어야 함
- 실업급여의 성립요건(Anwartschaftszeit)이 충족(사회법전 제3편 제142조)
 - 최소한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이 주어짐
 - 즉, 수급자는 실업 전 2년 내에 최소 12개월 동안 법정보험관계를 형성하였어야 함 (규범기간, 사회법전 제3편 제142조 제1문)
 - 규범기간은 실업급여의 청구권에 대한 모든 기타 전제요건이 충족하는 날에 시작함
 -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의 가입기간, 출산급여, 질병수당 및 완전한 수입감소능력으로 인한 연금 기간 역시 실업급여를 형성하는 기간에 산입됨
 - 실업급여를 형성하는 기간은 일관되게 형성될 필요가 없음

- 실업급여를 형성하는 기간의 중지는 영향을 받지 않음

3. 수급 중 소득인정여부 및 범위

- 실업급여가 허용된 기간 동안 수급자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 동 근로로부터 얻은 수입은 세금, 사회보험료, 광고비용 및 노동활동으로부터 발생한 165유로의 공제 후 산정(사회법전 제3편 제155조 제1항 제1문)

-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가 높은 운영비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영업이익의 30%를 영업비용으로서 일괄적으로 산정됨(사회법전 제3편 제155조 제1항 제2문)

IV

독일 고용보험료 산정 규정 분석

-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기초하지 않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
 - 이는 한편으로 보험료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성립
 - 다른 한편으로 높은 실업위험을 전가하려는 의도로 가입 신청하는데 따른 남용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단독으로 부담(사회법전 제3편 제 349a)

- 사회법전 제3편 제345b조는 신청에 의하여 법정보험관계가 형성된 피보험자가 납부 의무를 부담해야하는 소득을 규정
 - 사회법전 제3편 제28a 제1항 제2호(자영자), 제3호(제3국 등)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료 산정에 월소득의 총액
 - 사회법전 제3편 제28a 제1항 제4호(육아), 제5호(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월수입의 50%의 계산으로 금액을 산정

-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를 형성한 자영업자는 보험료 납부의무 대상인 소득의 범위
 - 자영업자는 자영업활동 개시 후 그리고 그 다음해(소위, 시작단계)까지는 월소득액의 50%만을 보험료를 부담할 소득대상으로 산정
 - 자영업자가 시작단계를 종료한 경우, 즉 영업개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는 100%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자영업자의 활동장소가 지역(예: 동독 또는 서독)에 종속되는 경우, 가입지역에 따라 월 소득의 기준 금액이 결정(사회법전 제3편 제345b 제1항 제2호)

- 자영업자들은 영업활동 시작 최초 2년 동안 서독 45.68 유로, 동독 40.43 유로가 산정
- 이와 같은 산정방법은 반복적으로 자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단 한 후 동일한 자영업 활동을 다시 새로이 시작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2018년 서독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최초 2년 월 보험료

= (서독 기준금액 3,045 유로 X 3.0%) X 50% = 45.68 유로

* 2018년 동독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의 영업개시 2년경과 후 월 보험료 = (동독 기준금액 2,695 유로 X 3.0%) = 80.85 유로

■ 육아휴직과 직업교육으로 인하여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자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은 월 소득의 50%수준 금액(사회법전 제345b 제1항 제3호)

- 육아휴직과 직업교육에 대한 보험료는 서독 45,68유로, 동독 40.43유로가 산정

■ 2018년 보험요율은 3.0%

- 어느 기준 금액이 적용되는 가는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예: 동독, 서독)에 따라서 결정
 - 기준 금액은 서독 3,045 유로, 동독 2,695 유로가 적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서독을 기준으로 기준금액이 형성
 - 외국인 근로자는 서·동독 구분 없이 91.35 유로(서독기준)를 부담가산

V

시사점

■ 고용관계의 단절 예방 및 지속을 위한 인적 적용범위

- 취업자(법 제25조)와 기타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법 제26조) 그리고 임의 가입자(법 제28a 조) 및 적용 제외되는 자(제27조, 28조)로 규정
- 피보험자로서 취업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자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고용된(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고용) 자를 포함
- 사회법상 소득보상과 관계된 자는 고용보험법체계서 의무보험 가입자로 간주
 -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이전에 형성된 고용관계를 지속·공고히 하려는 입법 취지
 - 예컨대 3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육아기간이나, 가족에 대한 6개월의 간병기간은 고용보험법상 법정 의무보험의 피보험자 지위

■ 자영 활동에 대한 임의가입 근거 규정

- 독일의 고용보험법제에서 임의적 신청으로 가입하여 실업을 보호받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었음
- 2006년 2월 1일 사회법전 제3편 제28a조는 다양한 인적 범위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현행법은 신청에 의한 임의 가입대상을 주당 최소 15시간을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 4개 인적범위에 대해 신청에 의한 법정(의무)보험관계 형성 가능성을 규정(제1항 제2호)
- 독일 입법권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에 대한 자발적인 진입가능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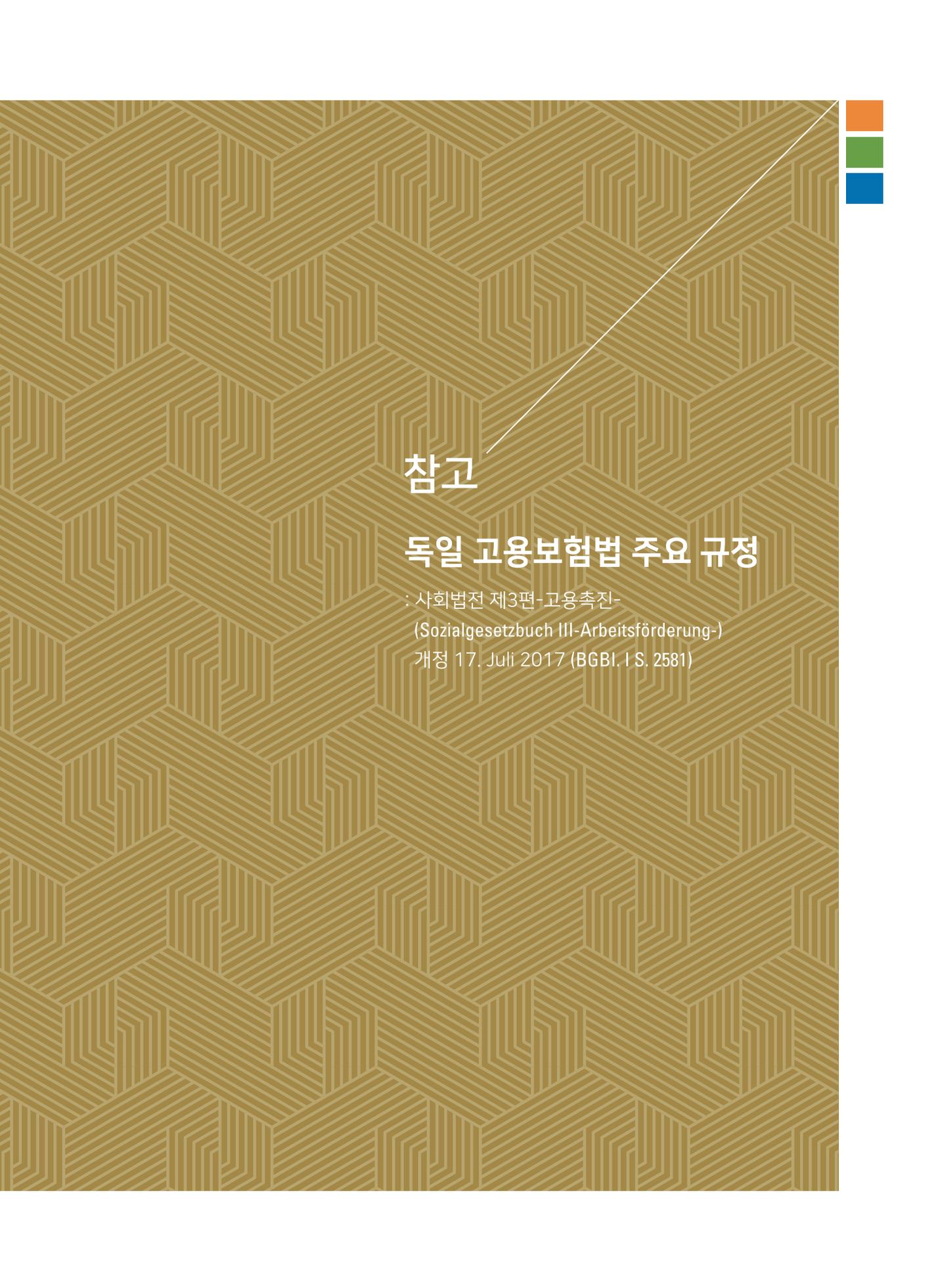
■ 임의가입의 신청자 요건

- 주당 최소 15시간의 자영활동에 종사하는 자
- 영업활동 개시 전, 지난 2년 동안 최소한 12개월 동안 법정보험관계를 형성했던 자
 - 취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지 않는 경우, 임의가입 하는데 있어 영향 받지 않음 - 보험기간 산정은 연속기간 또는 합산기간 무관
- 영업활동 개시 전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던 자
- 취업자 등 의무가입자(제25조, 제26조)나 공무원 등 가입면제(적용제외; 제27조, 제28조)된 자가 아니어야 함, 다만 저소득 취업자는 배제하지 않음

■ 임의보험의 남용가능성 예방

- 과거 고용보험의 가입이력만으로 자영업자에게 요구되는 이전보험기간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님
- 자영활동에 근거한 임의가입자로서 해당 영업활동을 2번 중단하였고, 중단기간 동안 실업급여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
- 고용관계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로서의 임의가입은 제한





참고

독일 고용보험법 주요 규정

: 사회법전 제3편-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Arbeitsförderung-)

개정 17. Juli 2017 (BGBl. I S. 2581)

<p>Zweites Kapitel Versicherungspflicht</p> <p>Erster Abschnitt Beschäftigte, Sonstige Versicherungs- pflichtige</p>	<p>제2장 법정(:의무)보험</p> <p>제1절 취업자, 기타 의무보험</p>
<p>§ 24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p> <p>(1) In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stehen Personen, die als Beschäftigte oder aus sonstigen Gründen versicherungspflichtig sind.</p> <p>(2) Da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beginnt für Beschäftigte mit dem Tag des Eintritts in das Beschäftigungsverhältnis oder mit dem Tag nach dem Erlöschen der Versicherungsfreiheit, für die sonstigen Versicherungspflichtigen mit dem Tag, an dem erstmals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Versicherungspflicht erfüllt sind.</p> <p>(3) Da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für Beschäftigte besteht während eines Arbeitsausfalls mit Entgeltausfall im Sinne der Vorschriften über das Kurzarbeitergeld fort.</p> <p>(4) Da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endet für Beschäftigte mit dem Tag des Ausscheidens aus dem Beschäftigungsverhältnis oder mit dem Tag vor Eintritt der Versicherungsfreiheit, für die sonstigen Versicherungspflichtigen mit dem Tag, an dem die Voraussetzungen für die Versicherungspflicht letztmals erfüllt waren.</p>	<p>제24조 법정(:의무)보험관계</p> <p>(1) 의무보험관계는 취업자 또는 기타 근거로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자에게 성립된다.</p> <p>(2) 법정보험관계는 피고용인은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 또는 적용제외(보험면제)가 소멸한 날, 기타 의무보험 피보험자는 전체요건이 최초로 충족된 날로 개시된다.</p> <p>(3) 취업자의 법정보험관계는 임금손실(결손)수당에 관한 규정상 의미의 임금손실을 수반한 고용상실 기간에도 지속된다.</p> <p>(4) 취업자에 대한 법정보험관계는 피고용관계로 종료되는 날 또는 보험면제가 개시되기 전날, 기타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는 의무보험에 대한 전제요건을 마지막으로 충족한 날에는 종료된다.</p>

<p>§ 25 Beschäftigte</p> <p>(1) Versicherungspflichtig sind Personen, die gegen Arbeitsentgelt oder zu ihrer Berufsausbildung beschäftigt (versicherungspflichtige Beschäftigung) sind. Auszubildende, die im Rahmen eines Berufsausbildungsvertrages nach dem Berufsbildungsgesetz in einer außerbetrieblichen Einrichtung ausgebildet werden, und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an dualen Studiengängen, stehen den Beschäftigten zur Berufsausbildung im Sinne des Satzes 1 gleich.</p> <p>(2) Bei Wehrdienstleistenden und Zivildienstleistenden, denen nach gesetzlichen Vorschriften für die Zeit ihres Dienstes Arbeitsentgelt weiterzugewähren ist, gilt das Beschäftigungsverhältnis durch den Wehrdienst oder Zivildienst als nicht unterbrochen. Personen, die nach dem Vierten Abschnitt des Soldatengesetzes Wehrdienst leisten, sind in dieser Beschäftigung nicht nach Absatz 1 versicherungspflichtig; sie gelten als Wehrdienst Leistende im Sinne des § 26 Abs. 1 Nr. 2. Die Sätze 1 und 2 gelten auch für Personen in einem Wehrdienstverhältnis besonderer Art nach § 6 des Einsatz-Weiterverwendungsgesetzes, wenn sie den Einsatzunfall in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erlitten haben.</p>	<p>제25조 취업자</p> <p>(1)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수당 임금에 대한 대가로 또는 직업교육을 위하여 고용된(의무보험의 고용) 자이다. 직업교육법에 따라서 직업교육계약의 범위 내 (사업장 이외)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생 및 복수학습프로그램 참가자는 제1문의 의미에서 직업교육에 의한 피고용인이 된다.</p> <p>(2)(병역의무)군복무 및 대체복무 기간 동안 법률규정에 따라 복무기간에 임금이 제공되는 경우, 군복무 및 대체복무에 의한 피고용관계는 중지되지 않는다. 군인법 제4절에 따라서 군복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동일한 직무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이들은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군복무 이행자로서 간주된다. 또한, 제1문 및 제2문은 배치-재사용법 제6조에 따라서 특별한 형태의 군복무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들은 법정보험관계에서 배치사고가 발생되어야 한다.</p>
<p>§ 26 Sonstige Versicherungspflichtige</p> <p>(1) Versicherungspflichtig sind</p> <p>1. Jugendliche, die in Einrichtungen der beruflichen Rehabilitation nach § 51 des Neunten Buches Leistungen zur Teilhabe am Arbeitsleben erhalten, die ihnen eine Erwerbstätigkeit auf dem allgemeinen Arbeitsmarkt ermöglichen sollen, sowie Personen, die in Einrichtungen der Jugendhilfe für eine Erwerbstätigkeit befähigt werden sollen,</p>	<p>제26조 기타 법정(의무)보험</p> <p>(1) 법정(의무)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호 이다.</p> <p>1. 사회법전 제9권 제51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직업참여를 위한 지원을 받는 청소년 및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직업능력을 향상 중인 자</p>

2. Personen, die nach Maßgabe des Wehrpflichtgesetzes, des § 58b des Soldatengesetzes oder des Zivildienstgesetzes Wehrdienst oder Zivildienst leisten und während dieser Zeit nicht als Beschäftigte versicherungspflichtig sind,

3. (weggefallen)

3a. (weggefallen)

4. Gefangene, die Arbeitsentgelt, Ausbildungsbeihilfe oder Ausfallentschädigung (§§ 43 bis 45, 176 und 177 des Strafvollzugsgesetzes) erhalten oder Ausbildungsbeihilfe nur wegen des Vorrangs von Leistungen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nach diesem Buch nicht erhalten; das Versicherungsverhältnis gilt während arbeitsfreier Sonnabende, Sonntage und gesetzlicher Feiertage als fortbestehend, wenn diese Tage innerhalb eines zusammenhängenden Arbeits- oder Ausbildungsabschnittes liegen. Gefangene im Sinne dieses Buches sind Personen, die im Vollzug von Untersuchungshaft, Freiheitsstrafen und freiheitsentziehenden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oder einstweilig nach § 126a Abs. 1 der Strafprozeßordnung untergebracht sind,

5. Personen, die als nicht satzungsmäßige Mitglieder geistlicher Genossenschaften oder ähnlicher religiöser Gemeinschaften für den Dienst in einer solchen Genossenschaft oder ähnlichen religiösen Gemeinschaft außerschulisch ausgebildet werden.

(2) Versicherungspflichtig sind Personen in der Zeit, für die sie

1. von einem Leistungsträger Mutterschaftsgeld, Krankengeld, Versorgungskrankengeld, Verletztengeld oder von einem Träger der medizinischen Rehabilitation Übergangsgeld beziehen,

2. von einem privaten Krankenversicherungsunternehmen Krankentagegeld beziehen,

2. 병역법, 군인법 제58b조 또는 대체복무법에 따른 군복무 내지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동 기간 동안 취업자로서의 법정(의무)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자

3. (삭제)

3a. (삭제)

4. 작업상여금, 직업훈련수당 또는 손실보상금(형집행법 제43조 ~ 제45조, 제176조 및 제177조)을 받거나 내지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직업교육의 장려에 대하여 이행의 우선순위로 인하여 직업훈련수당을 받지 못한 수용자이다. 보험관계는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이는 근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법전 제3편에 규정된 수용자는 형사소송법 제126a조 제1항에 따라서 미결구금, 자유형 및 자유를 박탈시키는 개선과 보호 처벌의 집행이 중지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자이다.

5. 종교단체 또는 종교와 유사한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는 자로서 학교 외에 이와 같은 단체 또는 공동체에서 직무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 자이다.

(2)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에는 법정(의무)보험의 피보험자이다

1. 급여관리운영주체로부터 출산수당, 질병보조금, 장애보조금, 상해보조금 또는 의료재활치료기관으로부터 과도기보조금을 받는 자이다.

2. 사보험회사로부터 정액(질병일)보험금을 받는 자이다.

<p>2a. von einem privaten Krankenversicherungsunternehmen, von einem Beihilfeträger des Bundes, von einem sonstigen öffentlich-rechtlichen Träger von Kosten in Krankheitsfällen auf Bundesebene, von dem Träger der Heilfürsorge im Bereich des Bundes, von dem Träger der truppenärztlichen Versorgung oder vo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Träger von Kosten in Krankheitsfällen auf Landesebene, soweit Landesrecht dies vorsieht, Leistungen für den Ausfall von Arbeitseinkünften im Zusammenhang mit einer nach den §§ 8 und 8a des Transplantationsgesetzes erfolgenden Spende von Organen oder Geweben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im Sinne von § 9 des Transfusionsgesetzes erfolgenden Spende von Blut zur Separation von Blutstammzellen oder anderen Blutbestandteilen beziehen,</p> <p>2b. von einer Pflegekasse, einem privaten Versicherungsunternehmen, der Festsetzungsstelle für die Beihilfe oder dem Dienstherrn Pflegeunterstützungsgeld beziehen oder</p> <p>3. von einem Träger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eine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beziehen,</p> <p>wenn sie unmittelbar vor Beginn der Leistungsverpflichtung waren oder Anspruch auf eine laufende Entgeltersatzleistung nach diesem Buch hatten.</p>	<p>2a. 혈액줄기세포 또는 다른 혈액구성요소의 분리를 위하여 이식법 제8조 및 제8a조에 따라서 실행된 장기 또는 조직의 기증 내지 수혈법 제9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혈액기증에 의하여 노동소득상실에 빠지는 경우 보험회사, 연방 지원기관, 질병발생 비용 지급하는 기타 공법상의 연방 기관, 연방 치료 기관, (공무원들을 위한) 연방 사회복지기관의 담당자, 군 의료 공급기관 또는 질병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공법상의 주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자이다.</p> <p>2b. 요양기관, 보험회사, 지원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 또는 공무원의 관리자로부터 요양지원금을 받는 자 또는</p> <p>3. 완전한 생계능력감소로 인하여 법정 연금보험기관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한 자이다.</p> <p>다만,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피보험관계의 이행 전에 직접적인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였거나 또는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대체보상을 신청하였어야 한다.</p>
<p>(2a) Versicherungspflichtig sind Personen in der Zeit, in der sie ein Kind, das das dritte Lebensjahr noch nicht vollendet hat, erziehen, wenn sie</p> <p>1. unmittelbar vor der Kindererziehung versicherungspflichtig waren oder Anspruch auf eine laufende Entgeltersatzleistung nach diesem Buch hatten und</p>	<p>(2a)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현재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 다만,</p> <p>1. 자녀양육 이전에 직접적으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였거나 또는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대체보상을 신청하였어야 하며 그리고</p>

2. sich mit dem Kind im Inland gewöhnlich aufhalten oder bei Aufenthalt im Ausland Anspruch auf Kindergeld nach dem Einkommensteuergesetz oder Bundeskindergeldgesetz haben oder ohne die Anwendung des § 64 oder § 65 des Einkommensteuergesetzes oder des § 3 oder § 4 des Bundeskindergeldgesetzes haben würden.

Satz 1 gilt nur für Kinder

1. der oder des Erziehenden,
2. seiner nicht dauernd getrennt lebenden Ehegattin oder ihres nicht dauernd getrennt lebenden Ehegatten oder
3. ihrer nicht dauernd getrennt lebenden Lebenspartnerin oder seines nicht dauernd getrennt lebenden Lebenspartners.

Haben mehrere Personen ein Kind gemeinsam erzogen, besteht Versicherungspflicht nur für die Person, der nach den Regelungen des Rechts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die Erziehungszeit zuzuordnen ist (§ 56 Abs. 2 des Sechsten Buches).

(2b) Versicherungspflichtig sind Personen in der Zeit, in der sie als Pflegeperson einen Pflegebedürftigen mit mindestens Pflegegrad 2 im Sinne des Elften Buches, der Leistungen aus der Pflegeversicherung nach dem Elften Buch oder Hilfe zur Pflege nach dem Zwölften Buch oder gleichartige Leistungen nach anderen Vorschriften bezieht, nicht erwerbsmäßig wenigstens zehn Stunden wöchentlich, verteilt auf regelmäßig mindestens zwei Tage in der Woche, in seiner häuslichen Umgebung pflegen, wenn sie unmittelbar vor Beginn der Pflegetätigkeit versicherungspflichtig waren oder Anspruch auf eine laufende Entgeltersatzleistung nach diesem Buch hatten. Versicherungspflicht besteht auch, wenn die Voraussetzungen durch die Pflege mehrerer Pflegebedürftiger erfüllt werden.

2. 자녀와 함께 내국에 일상적으로 머무르거나 또는 내국에 체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또는 제 65조 내지 연방아동수당법 제3조 또는 제4조의 적용 없이 소득세법 또는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서 아동수당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제1문은 단지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된다.

1. 자녀를 양육하는 자,
2. 지속적으로 별거하지 아니하는 배우자 또는
3. 지속적으로 별거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의 자녀

다수의 사람들이 한 명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법정실업보험의 피보험자는 법정연금보험의 권리 규정에 따라서 오직 직접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이다(사회법전 제6권 제56조 제2항).

(2b)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현재 간병인으로서 사회법전 제5권에 규정된 최소 간병 2등급에 해당하고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자신의 가정환경에서 보살펴야 한다. 이 때 간병인은 주당 최소 10시간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으며, 또 주당 최소 2일을 규칙적인 간격으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사회법전 제11권에 따라서 간병보험으로부터 보상금, 사회법전 제12권에 따라서 간병을 위한 지원을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병인은 간병활동 이전에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였거나 또는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대체 보상(실업수당)을 신청하였어야 한다.

<p>(3) Nach Absatz 1 Nr. 1 ist nicht versicherungspflichtig, wer nach § 25 Abs. 1 versicherungspflichtig ist. Nach Absatz 1 Nr. 4 ist nicht versicherungspflichtig, wer nach anderen Vorschriften dieses Buches versicherungspflichtig ist. Versicherungspflichtig wegen des Bezuges von Mutterschaftsgeld nach Absatz 2 Nr. 1 ist nicht, wer nach Absatz 2a versicherungspflichtig ist. Nach Absatz 2 Nr. 2 ist nicht versicherungspflichtig, wer nach Absatz 2 Nr. 1 versicherungspflichtig ist oder während des Bezugs von Krankentagegeld Anspruch auf Entgeltersatzleistungen nach diesem Buch hat. Nach Absatz 2a und 2b ist nicht versicherungspflichtig, wer nach anderen Vorschriften dieses Buches versicherungspflichtig ist oder während der Zeit der Erziehung oder Pflege Anspruch auf Entgeltersatzleistungen nach diesem Buch hat; Satz 3 bleibt unberührt. Trifft eine Versicherungspflicht nach Absatz 2a mit einer Versicherungspflicht nach Absatz 2b zusammen, geht die Versicherungspflicht nach Absatz 2a vor.</p>	<p>(3)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법정보험의 피보험자는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사회법전 제3편의 다른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 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제2a조에 의거하여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 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산수당으로 인하여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병가 중 급여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회법전 제3편에 의거하여 소득대체보상을 신청한 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사회법전 제3편의 다른 규정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또는 육아 내지 간병 기간 동안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소득대체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2a조 및 제2b조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3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a조와 제2b조에 따른 법정보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법정보험은 제2a조에 따라서 적용된다.</p>
<p>(4) (weggefallen)</p>	<p>(4) (삭제)</p>
<p>§ 27 Versicherungsfreie Beschäftigte</p> <p>(1)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 in einer Beschäftigung als</p> <p>1. Beamtin, Beamter, Richterin, Richter, Soldatin auf Zeit, Soldat auf Zeit, Berufssoldatin oder Berufssoldat der Bundeswehr sowie als sonstige Beschäftigte oder sonstiger Beschäftigter des Bundes, eines Landes, eines Gemeindeverbandes, einer Gemeinde, einer öffentlich-rechtlichen Körperschaft, Anstalt, Stiftung oder eines Verbandes öffentlich-rechtlicher Körperschaften oder deren Spitzenverbänden, wenn sie nach beamtenrechtlichen Vorschriften oder Grundsätzen bei Krankheit Anspruch auf Fortzahlung der Bezüge und auf Beihilfe oder Heilfürsorge haben,</p>	<p>제27조 가입면제(적용제외) 취업자</p> <p>(1) 다음에 규정된 직무로서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은 자유보험가입자에 속한다.</p> <p>1. 공무원, 판사, 연방군의 소집에 의하여 복무하는 군인 또는 직업군인(병사),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공법상의 단체, 기관, 재단 또는 공법상 단체의 협회 또는 공법상 단체의 상부기관의 기타 피고용인으로서 고용관계에 있는 자. 다만, 이들은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법의 규정 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지원 내지 지원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p>2. Geistliche der als öffentlich-rechtliche Körperschaften anerkannten Religionsgesellschaften, wenn sie nach beamtenrechtlichen Vorschriften oder Grundsätzen bei Krankheit Anspruch auf Fortzahlung der Bezüge und auf Beihilfe haben,</p> <p>3. Lehrerin oder Lehrer an privaten genehmigten Ersatzschulen, wenn sie hauptamtlich beschäftigt sind und nach beamtenrechtlichen Vorschriften oder Grundsätzen bei Krankheit Anspruch auf Fortzahlung der Bezüge und auf Beihilfe haben,</p> <p>4. satzungsmäßige Mitglieder von geistlichen Genossenschaften, Diakonissen und ähnliche Personen, wenn sie sich aus überwiegend religiösen oder sittlichen Beweggründen mit Krankenpflege, Unterricht oder anderen gemeinnützigen Tätigkeiten beschäftigen und nicht mehr als freien Unterhalt oder ein geringes Entgelt beziehen, das nur zur Beschaffung der unmittelbaren Lebensbedürfnisse an Wohnung, Verpflegung, Kleidung und dergleichen ausreicht,</p> <p>5. Mitglieder des Vorstandes einer Aktiengesellschaft für das Unternehmen, dessen Vorstand sie angehören. Konzernunternehmen im Sinne des § 18 des Aktiengesetzes gelten als ein Unternehmen.</p>	<p>2. 공법상 단체로서 인정된 종교사회의 성직자, 다만, 이들이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법의 규정 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지원 내지 지원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p>3. 사적으로 승인된 대안학교의 교사. 다만, 이들이 풀타임으로 고용되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법의 규정 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지원 내지 지원기관으로부터 수당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p>4. 정관에 따른 종교단체의 회원, 부목사 및 유사한 사람들. 다만 이들이 종교적 또는 도덕적인 이유에 의하여 간호, 교육, 내지 다른 공익활동에 종사하면서 생계와 관계된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의 조달을 목적으로 근소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p> <p>5.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주식법 제18조에 규정된 콘체른은 기업으로서 간주된다.</p>
<p>(2)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 in ein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abweichend von § 8 Abs. 2 Satz 1 des Vierten Buches werden geringfügige Beschäftigungen und nicht geringfügige Beschäftigungen nicht zusammengerechnet. Versicherungsfreiheit besteht nicht für Personen, die</p> <p>1. im Rahmen betrieblicher Berufsbildung, nach dem Jugendfreiwilligendienstgesetz, nach dem Bundesfreiwilligendienstgesetz,</p> <p>2. wegen eines Arbeitsausfalls mit Entgeltausfall im Sinne der Vorschriften über das Kurzarbeitergeld oder</p>	<p>(2) 저소득 근로자는 자유보험가입자에 속한다. 사회법전 제4권 제8조 제2항 제1문과 달리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근로자는 함께 산정되지 않는다. 자유보험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p> <p>1. 경영과 관계된 직업교육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자원 봉사법에 따라서, 연방 자원 봉사법에 따라서,</p> <p>2. 단기 근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금 상실과 근로상실로 인하여 또는</p>

<p>3. wegen stufenweiser Wiedereingliederung in das Erwerbsleben (§ 74 Fünftes Buch, § 44 Neuntes Buch) oder aus einem sonstigen der in § 146 Absatz 1 genannten Gründe</p> <p>nur geringfügig beschäftigt sind.</p>	<p>3. 직장생활에 단계적인 재편입으로 인하여(사회법 전 제5권 제74조, 사회법전 제9권 제44조) 또는 기타 제146조 제1항에 규정된 이유에 의하여</p> <p>단지 저소득의 고용관계인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p>
<p>(3)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 in einer</p> <p>1. unständigen Beschäftigung, die sie berufsmäßig ausüben. Unständig ist eine Beschäftigung, die auf weniger als eine Woche der Natur der Sache nach beschränkt zu sein pflegt oder im voraus durch Arbeitsvertrag beschränkt ist,</p> <p>2. Beschäftigung als Heimarbeiterin oder Heimarbeiter, die gleichzeitig mit einer Tätigkeit als Zwischenmeisterin oder Zwischenmeister (§ 12 Abs. 4 Viertes Buch) ausgeübt wird, wenn der überwiegende Teil des Verdienstes aus der Tätigkeit als Zwischenmeisterin oder Zwischenmeister bezogen wird,</p> <p>3. Beschäftigung als ausländische Arbeitnehmerin oder ausländischer Arbeitnehmer zur beruflichen Aus- oder Fortbildung, wenn</p> <p>a) die berufliche Aus- oder Fortbildung aus Mitteln des Bundes, eines Landes, einer Gemeinde oder eines Gemeindeverbandes oder aus Mitteln einer Einrichtung oder einer Organisation, die sich der Aus- oder Fortbildung von Ausländerinnen oder Ausländern widmet, gefördert wird,</p> <p>b) sie verpflichtet sind, nach Beendigung der geförderten Aus- oder Fortbildung das Inland zu verlassen, und</p>	<p>(3) 적용제외 되는 자는</p> <p>1. 직업상 일시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일시적인 직무는 사물의 본성에 따라서 일주일보다 적게 제한적으로 관리되거나 또는 미리 고용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p> <p>2. 하청업자(사회법전 제4권 제12조 제4항)로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재택근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다만, 소득의 중요부분이 하청업자로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p> <p>3. 직업상 교육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외국 근로자로서 고용된 자, 다만</p> <p>a) 직업상 교육 또는 연수가 연방, 주, 공동체, 지방 자치단체연맹의 자금으로부터 또는 외국인의 직업상 교육 내지 연수를 목적으로 제공된 기관 또는 조직의 자금으로부터 지원되어야 한다.</p> <p>b) 지원된 교육 또는 연수의 종료 후 출국하여야 한다. 및</p>

<p>c) die im Inland zurückgelegten Versicherungszeiten weder nach dem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noch nach zwischenstaatlichen Abkommen oder dem Recht des Wohnlandes der Arbeitnehmerin oder des Arbeitnehmers einen Anspruch auf Leistungen für den Fall der Arbeitslosigkeit in dem Wohnland der oder des Betreffenden begründen können,</p> <p>4. Beschäftigung als Bürgermeisterin, Bürgermeister, Beigeordnete oder Beigeordneter, wenn diese Beschäftigung ehrenamtlich ausgeübt wird,</p> <p>5. Beschäftigung, die nach § 16e des Zweiten Buches gefördert wird.</p>	<p>c) 내국에 다시 복귀되는 보험기간은 유럽공동체의 권리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당사자의 주거국가에서 실업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간의 협정 또는 피고용인의 거주국가의 권리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p> <p>4. 시장 또는 의원으로서 고용된 자, 다만 이들의 직무가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수행되어야 한다.</p> <p>5. 사회법전 제2권에 따라서 고용이 지원되어야 한다.</p>
<p>(4)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 die während der Dauer</p> <p>1. ihrer Ausbildung an einer allgemeinbildenden Schule oder</p> <p>2. ihres Studiums als ordentliche Studierende einer Hochschule oder einer der fachlichen Ausbildung dienenden Schule</p> <p>eine Beschäftigung ausüben. Satz 1 Nr. 1 gilt nicht, wenn die oder der Beschäftigte schulische Einrichtungen besucht, die der Fortbildung außerhalb der üblichen Arbeitszeit dienen.</p>	<p>(4) 적용제외 되는 자는</p> <p>1. 일반 학교에서 그들의 교육기간 동안 또는</p> <p>2. 대학교의 정규 교과과정 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에 이용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그들의 대학공부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자이다.</p> <p>피고용인이 일반적인 근무시간 외에 연수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제1문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p>
<p>(5)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 die während einer Zeit, in der ein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besteht, eine Beschäftigung ausüben. Satz 1 gilt nicht für Beschäftigungen, die während der Zeit, in der ein Anspruch auf Teilarbeitslosengeld besteht, ausgeübt werden.</p>	<p>(5) 적용제외 자는 실업수당을 청구한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제1문은 부분실업수당에 대한 청구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 28 Sonstige versicherungsfreie Personen</p> <p>(1)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das Lebensjahr für den Anspruch auf Regelaltersrente im Sinne des Sechsten Buches vollenden, mit Ablauf des Monats, in dem sie das maßgebliche Lebensjahr vollenden, 2. die wegen einer Minderung ihrer Leistungsfähigkeit dauernd nicht mehr verfügbar sind, von dem Zeitpunkt an, an dem die Agentur für Arbeit diese Minderung der Leistungsfähigkeit und der zuständige Träger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volle Erwerbsminderung im Sinne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festgestellt haben, 3. während der Zeit, für die ihnen eine dem Anspruch auf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vergleichbare Leistung eines ausländischen Leistungsträgers zuerkannt ist. <p>(2) Versicherungsfrei sind Personen in einer Beschäftigung oder auf Grund des Bezuges einer Sozialleistung (§ 26 Abs. 2 Nr. 1 und 2), soweit ihnen während dieser Zeit ein Anspruch auf Rente wegen voller Erwerbsminderung aus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 zuerkannt ist.</p> <p>(3) Versicherungsfrei sind nicht-deutsche Besatzungsmitglieder deutscher Seeschiffe, die ihren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nicht in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einem Vertragsstaat des Abkommens über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 oder der Schweiz haben.</p>	<p>제28조 기타 적용제외(·가입면제) 되는 자</p> <p>(1) 가입면제(·적용제외) 되는 자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법전 제6권에 규정된 기초고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도달한 자이다. 이점에 있어서 중요한 연령의 도달은 말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2. 노동능력 감소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이다. 이는 고용지원센터가 노동능력 감소를 확인한 시점과 법정연금보험 관할 담당기관이 법정연금보험의 의미에서 완전한 생계능력감소를 확인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3. 완전한 생계능력감소로 인하여 연금에 대한 청구와 비교 가능한 외국 이행담당자의 이행이 인정된 시점에 자유보험가입자가 된다. <p>(2) 가입면제(적용제외)보험가입자는 고용에서 또는 사회급부의 관계로 인하여(제2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형성된다. 이점에 있어서 자유보험가입자는 동 기간 동안 법정 연금보험으로부터 완전한 생계능력감소로 인하여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p> <p>(3) 적용제외 자는 자신의 주소지 또는 일상적인 거주지가 유럽회원국, 유럽경제지역의 계약국 또는 스위스에 존재하지 않고, 독일인이 아니면서 독일 선박의 승무원이어야 한다.</p>
--	--

<p>Zweiter Abschnitt</p> <p>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p>	<p>제2절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p>
<p>§ 28a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p> <p>(1) Ein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können Personen begründen, di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eggefallen) 2. eine selbständige Tätigkeit mit einem Umfang von mindestens 15 Stunden wöchentlich aufnehmen und ausüben, 3. eine Beschäftigung mit einem Umfang von mindestens 15 Stunden wöchentlich in einem Staat außerhalb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Union, eines Vertragsstaates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oder der Schweiz aufnehmen und ausüben, 4. eine Elternzeit nach § 15 de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es in Anspruch nehmen oder 5. sich beruflich weiterbilden, wenn dadurch ein beruflicher Aufstieg ermöglicht, ein beruflicher Abschluss vermittelt oder zu einer anderen beruflichen Tätigkeit befähigt wird; ausgeschlossen sind Weiterbildungen im Sinne des § 180 Absatz 3 Satz 1 Nummer 1, es sei denn, die berufliche Weiterbildung findet in einem berufsqualifizierenden Studiengang an einer Hochschule oder einer ähnlichen Bildungsstätte unter Anrechnung beruflicher Qualifikationen statt. <p>Gelegentliche Abweichungen von der in den Satz 1 Nummer 2 und 3 genannten wöchentlichen Mindeststundenzahl bleiben unberücksichtigt, wenn sie von geringer Dauer sind.</p>	<p>제28a조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p> <p>(1) 다음 각 호의 자는 신청에 의하여 법정 보험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주당 최소 15시간의 자영 활동을 수용하여 종사하는 자, 3. 제3국, 유럽회원국, 유럽경제공동체의 계약국 또는 스위스 이외 국가에서 주당 최소 15시간의 고용(직무)을 수용하여 종사하는 자, 4. 연방 육아수당 및 육아휴직법 제15조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청구한 자 또는 5. 추가(계속)교육을 받는 자, 다만 훈련을 통해서 직업상 발전이 가능해야 하고, 직업교육이 종료되거나 또는 다른 직업 활동에 대한 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 직업상 추가교육이 대학교의 전문자격 교과과정에서 또는 직업상 자격의 참작 하에 비슷한 교육시설에서 행해지지 않는 이상 제180조 제3항 제1문 제1호에 규정된 추가교육은 허용되지 않는다. <p>단기간에 행해지는 경우에는 제1문 제2호 및 제3호에 언급된 주당 최소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p>

<p>(2) Voraussetzung für die Versicherungspflicht ist, dass die antragstellende Person</p> <p>1. innerhalb der letzten zwei Jahre vor der Aufnahme der Tätigkeit oder Beschäftigung oder dem Beginn der Elternzeit o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mindestens zwölf Monate in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gestanden hat oder</p> <p>2. unmittelbar vor der Aufnahme der Tätigkeit oder der Beschäftigung oder dem Beginn der Elternzeit oder 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Anspruch auf eine Entgeltersatzleistung nach diesem Buch hatte</p> <p>und weder versicherungspflichtig (§§ 25, 26) noch versicherungsfrei (§§ 27, 28) ist; eine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 27 Absatz 2) schließt die Versicherungspflicht nicht aus. Die Begründung eine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s auf Antrag nach Absatz 1 Satz 1 Nummer 2 ist ausgeschlossen, wenn die antragstellende Person bereits versicherungspflichtig nach Absatz 1 Satz 1 Nummer 2 war, die zu dieser Versicherungspflicht führende Tätigkeit zweimal unterbrochen hat und in den Unterbrechungszeiten einen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geltend gemacht hat. Die Begründung eine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s auf Antrag nach Absatz 1 Satz 1 Nummer 4 ist ausgeschlossen, soweit für dasselbe Kind bereits eine andere Person nach § 26 Absatz 2a versicherungspflichtig ist.</p>	<p>(2) 법정보험에 대한 전제요건은 신청자가</p> <p>1. 영업활동 또는 취업(고용수용)의 개시, 육아휴직 내지 추가(계속)직업훈련의 개시 이전에 지난 2년 동안 최소 12개월 동안 법정보험관계를 형성하였거나 또는</p> <p>2. 영업활동 또는 취업(고용수용)의 개시, 육아휴직 또는 추가(계속)교육의 시작 전에 사회법전 제3편에 따라서 소득대체급여를 받았고,</p> <p>의무가입자(제25조, 제26조)도 또는 적용제외자(제27조, 제28조)도 아니어야 한다; 다만 저소득 취업(제27조 제2항)은 법정보험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신청자가 이미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였으며, 동 법정보험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2번 중단하였으며 및 중단기간 동안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제1조 제1문 제2호에 따른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제26조 제2a항에 따라서 법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 제1문 제4호에 따른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p>
--	--

<p>(3) Der Antrag muss spätestens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Aufnahme der Tätigkeit oder Beschäftigung oder dem Beginn der Elternzeit oder beruflichen Weiterbildung, die zur Begründung eine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s auf Antrag berechtigt, gestellt werden. Da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beginnt mit dem Tag, an dem erstmals die Voraussetz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erfüllt sind. Kann ein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allein deshalb nicht begründet werden, weil dies wegen einer vorrangigen Versicherungspflicht (§§ 25, 26) oder Versicherungsfreiheit (§§ 27, 28) ausgeschlossen ist, muss der Antrag abweichend von Satz 1 spätestens innerhalb von drei Monaten nach dem Wegfall des Ausschlussstatbestandes gestellt werden.</p>	<p>(3) 신청서는 늦어도 영업활동 또는 고용 개시 후, 육아휴직 또는 직업교육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신청에 의하여 법정보험관계의 형성에 대하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법정보험관계는 제1항 및 제2항의 전제요건을 처음 충족하는 날에 시작된다.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가 단독으로 형성되지 않는 것은 법정보험(제25조, 제26조) 또는 자유보험가입자(제27조, 제28조)로 인하여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신청서는 제1문과 달리 허용되지 않는 구성요건이 사라지는 경우 늦어도 3개월 안에 제출되어야 한다.</p>
<p>(4) Die Versicherungspflicht nach Absatz 1 ruht, wenn während der Versicherungspflicht nach Absatz 1 eine weitere Versicherungspflicht (§§ 25, 26) oder Versicherungsfreiheit nach § 27 eintritt. Eine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 27 Absatz 2) führt nicht zum Ruhen der Versicherungspflicht nach Absatz 1.</p>	<p>(4) 제1항에 따른 법정보험기간 동안 계속해서 법정보험(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자유보험가입자로서 법정보험관계를 시작하는 경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보험관계는 중지된다. 저소득 근로(제27조 제2항)는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정보험관계를 중지시키지 못한다.</p>
<p>(5) Das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ende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wenn die oder der Versicherte eine Entgeltersatzleistung nach § 3 Absatz 4 Nummer 1 bis 3 bezieht, 2. mit Ablauf des Tages, an dem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1 letztmals erfüllt waren, 3. wenn die oder der Versicherte mit der Beitragszahlung länger als drei Monate in Verzug ist, mit Ablauf des Tages, für den letztmals Beiträge gezahlt wurden, 4. in den Fällen des § 28, 	<p>(5) 법정보험관계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약 피보험자가 제3조 제4항 제1문 ~ 제3문에 따라서 대체보상이행에 관계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서 전제요건이 마지막으로 충족되는 날의 익일, 3. 만약 피보험자가 마지막 보험료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제28조의 경우,

<p>5. durch Kündigung der oder des Versicherten; die Kündigung ist erstmals nach Ablauf von fünf Jahren zulässig; die Kündigungsfrist beträgt drei Monate zum Ende eines Kalendermonats.</p>	<p>5. 피보험자의 해지에 의한 경우. 해지는 최초 5년의 경과 후 허용되며, 해지기간은 역월(달력)의 종료 시(마지막 날)부터 3개월에 달한다.</p>
<p>§ 136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p> <p>(1)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haben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p> <p>1. bei Arbeitslosigkeit oder</p> <p>2. bei beruflicher Weiterbildung.</p> <p>(2) Wer das für die Regelaltersrente im Sinne des Sechsten Buches erforderliche Lebensjahr vollendet hat, hat vom Beginn des folgenden Monats an keinen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p>	<p>제136조 실업급여의 청구</p> <p>(1) 피고용인은 다음의 경우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p> <p>1.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p> <p>2. 직업 교육의 경우.</p> <p>(2) 사회법전 제6권에 규정된 기본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은 익월의 1일의 시작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p>
<p>§ 137 Anspruchsvoraussetzungen bei Arbeitslosigkeit</p> <p>(1)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bei Arbeitslosigkeit hat, wer</p> <p>1. arbeitslos ist,</p> <p>2. sich bei der Agentur für Arbeit arbeitslos gemeldet und</p> <p>3. die Anwartschaftszeit erfüllt hat.</p> <p>(2) Bis zur Entscheidung über den Anspruch kann die antragstellende Person bestimmen, dass der Anspruch nicht oder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entstehen soll.</p>	<p>제137조 실업상태에서 청구요건</p> <p>(1) 실업상태에서 다음의 자는 실업급여청구권을 가진다.</p> <p>1. 실업이고</p> <p>2.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p> <p>3.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자.</p> <p>(2)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결정될 때까지 신청자는 신청서를 회수하거나 또는 추후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p>
<p>§ 138 Arbeitslosigkeit</p> <p>(1) Arbeitslos ist, wer Arbeitnehmerin oder Arbeitnehmer ist und</p> <p>1. nicht in einem Beschäftigungsverhältnis steht (Beschäftigungslosigkeit),</p>	<p>제138조 실업상태</p> <p>(1) 실업은 피고용인이</p> <p>1.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는 것(고용상실),</p>

<p>2. sich bemüht, die eigene Beschäftigungslosigkeit zu beenden (Eigenbemühungen), und</p> <p>3. den Vermittlungsbemühungen der Agentur für Arbeit zur Verfügung steht (Verfügbarkeit).</p> <p>(2) Eine ehrenamtliche Betätigung schließt Arbeitslosigkeit nicht aus, wenn dadurch die berufliche Eingliederung der oder des Arbeitslosen nicht beeinträchtigt wird.</p>	<p>2. 자신의 고용상실을 끝내려고 노력하는 것(노력),</p> <p>3. 고용지원센터에 중개노력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 것(처분 가능성)이다.</p> <p>(2) 무보수의 명예직이 실업이라는 사실자체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무보수의 명예직은 수급자에 속한다.</p>
<p>(3) Di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selbständigen Tätigkeit, Tätigkeit als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oder mithelfender Familienangehöriger (Erwerbstätigkeit) schließt die Beschäftigungslosigkeit nicht aus, wenn die Arbeits- oder Tätigkeitszeit (Arbeitszeit) weniger als 15 Stunden wöchentlich umfasst; gelegentliche Abweichungen von geringer Dauer bleiben unberücksichtigt. Die Arbeitszeiten mehrerer Erwerbstätigkeiten werden zusammengerechnet.</p>	<p>(3) 직무 및 근무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 직무 수행, 자영업활동 또는 가족구성원을 도와주는 활동(생계활동)은 고용상실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직무시간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수의 직업활동으로 인한 근무시간은 함께 계산된다.</p>
<p>(4) Im Rahmen der Eigenbemühungen hat die oder der Arbeitslose alle Möglichkeit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zu nutzen. Hierzu gehören insbesondere</p> <p>1. die Wahrnehmung der Verpflichtungen aus der Eingliederungsvereinbarung,</p> <p>2. die Mitwirkung bei der Vermittlung durch Dritte und</p> <p>3. die Inanspruchnahme der Selbstinformationseinrichtungen der Agentur für Arbeit.</p>	<p>(4) 수급자는 자신의 고용상실을 끝내고자 하는 경우 구직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이용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다음의 사항들이 속한다.</p> <p>1. 구직 시 의무 인지,</p> <p>2. 제3자에 의한 중재에서 협력 및</p> <p>3. 고용지원센터의 자체 정보시설의 이용.</p>
<p>(5) Den Vermittlungsbemühungen der Agentur für Arbeit steht zur Verfügung, wer</p> <p>1. eine versicherungspflichtige, mindestens 15 Stunden wöchentlich umfassende zumutbare Beschäftigung unter den üblichen Bedingungen des für sie oder ihn in Betracht kommenden Arbeitsmarktes ausüben kann und darf,</p>	<p>(5) 고용지원센터는 다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p> <p>1.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전제조건 하에 주당 최소 15시간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허가된 사람.</p>

<p>2. Vorschlägen der Agentur für Arbeit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zeit- und ortsnah Folge leisten kann,</p> <p>3. bereit ist, jede Beschäftigung im Sinne der Nummer 1 anzunehmen und auszuüben, und</p> <p>4. bereit ist, an Maßnahmen zur beruflichen Eingliederung in das Erwerbsleben teilzunehmen.</p>	<p>2. 구직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제안을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근접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사람,</p> <p>3. 제1호에 규정된 모든 직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p> <p>4. 구직에 대한 조치에 참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p>
<p>§ 141 Persönliche Arbeitslosmeldung</p> <p>(1) Die oder der Arbeitslose hat sich persönlich bei der zuständigen Agentur für Arbeit arbeitslos zu melden. Eine Meldung ist auch zulässig, wenn die Arbeitslosigkeit noch nicht eingetreten, der Eintritt der Arbeitslosigkeit aber innerhalb der nächsten drei Monate zu erwarten ist.</p> <p>(2) Die Wirkung der Meldung erlischt</p> <p>1. bei einer mehr als sechswöchigen Unterbrechung der Arbeitslosigkeit,</p> <p>2. mit der Aufnahme der Beschäftigung, selbständigen Tätigkeit, Tätigkeit als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oder als mithelfender Familienangehöriger, wenn die oder der Arbeitslose diese der Agentur für Arbeit nicht unverzüglich mitgeteilt hat.</p>	<p>제141조 실업 신고</p> <p>(1) 수급자는 개인적으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는 실업상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상태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발생되어야 한다.</p> <p>(2) 수급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의 효력은 다음의 경우에 소멸된다.</p> <p>1. 실업상태가 6주 이상 중지되는 경우,</p> <p>2. 직무, 자영업활동, 가족구성원을 도와주는 활동을 수용하는 경우.</p>
<p>(3) Ist die zuständige Agentur für Arbeit am ersten Tag der Beschäftigungslosigkeit der oder des Arbeitslosen nicht dienstbereit, so wirkt eine persönliche Meldung an dem nächsten Tag, an dem die Agentur für Arbeit dienstbereit ist, auf den Tag zurück, an dem die Agentur für Arbeit nicht dienstbereit war.</p>	<p>(3) 관할 고용지원센터가 수급자의 실직 첫 날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 결과 실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일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 날은 실직 첫 날로 소급 적용된다.</p>

<p>§ 142 Anwartschaftszeit</p> <p>(1) Die Anwartschaftszeit hat erfüllt, wer in der Rahmenfrist (§ 143) mindestens zwölf Monate in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gestanden hat. Zeiten, die vor dem Tag liegen, an dem der Anspruch auf Arbeitslosengeld wegen des Eintritts einer Sperrzeit erloschen ist, dienen nicht zur Erfüllung der Anwartschaftszeit.</p>	<p>제142조 실업급여의 성립요건</p> <p>(1) 최소 12개월 동안 법정보험관계를 형성하는 자는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금지처분의 발생으로 인하여 실업급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전 기간은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에 산입되지 않는다.</p>
<p>(2) Für Arbeitslose, die die Anwartschaftszeit nach Absatz 1 nicht erfüllen sowie darlegen und nachweisen, dass</p> <p>1. sich die in der Rahmenfrist zurückgelegten Beschäftigungstage überwiegend aus versicherungspflichtigen Beschäftigungen ergeben, die auf nicht mehr als zehn Wochen im Voraus durch Arbeitsvertrag zeit- oder zweckbefristet sind, und</p> <p>2. das in den letzten zwölf Monaten vor der Beschäftigungslosigkeit erzielte Arbeitsentgelt die zum Zeitpunkt der Anspruchsentstehung maßgebliche Bezugsgröße nach § 18 Absatz 1 des Vierten Buches nicht übersteigt, gilt bis zum 31. Juli 2018, dass die Anwartschaftszeit sechs Monate beträgt. § 27 Absatz 3 Nummer 1 bleibt unberührt.</p>	<p>(2) 다음의 사항은 실업급여의 형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및 증명하지 못한 수급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p> <p>1. 규정기간에 수행한 직무일은 10주 전에 시간 또는 목적이 정해진 고용계약에 의한 법정보험관계로부터 발생된다.</p> <p>2. 사회법전 제4권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청구권의 발생 시점의 기준 금액을 넘지 못하면서 실업 이전 과거 12개월 동안 지원받은 실업급여는 2018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때 실업급여의 형성요건은 6개월 동안 적용된다. 제27조 제3항 제1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p>
<p>§ 147 Grundsatz</p> <p>(1) Die Dauer des Anspruchs auf Arbeitslosengeld richtet sich nach</p> <p>1. der Dauer der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 innerhalb der um drei Jahre erweiterten Rahmenfrist und</p> <p>2. dem Lebensalter, das die oder der Arbeitslose bei der Entstehung des Anspruchs vollendet hat.</p>	<p>제147조 일반원칙</p> <p>(1)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p> <p>1. 약 3년의 확장된 규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법정보험의 가입기간 및</p> <p>2.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도달연령에 따른다.</p>

Die Vorschriften des Ersten Unterabschnitts zum Ausschluss von Zeiten bei der Erfüllung der Anwartschaftszeit und zur Begrenzung der Rahmenfrist durch eine vorangegangene Rahmenfrist gelten entsprechend.

시간의 제외에 관한 첫 번째 절의 규정은 실업급여의 성립요건의 충족에서 그리고 과거 규정기간을 통한 규정기간의 제한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2) Die Dauer des Anspruchs auf Arbeitslosengeld beträgt

nach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n mit einer Dauer von insgesamt mindestens ... Monaten	und nach Vollendung des ... Lebensjahres	... Monate
12		6
16		8
20		10
24		12
30	50.	15
36	55.	18
48	58.	24

(2)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법정보험관계에 따른 총 기간 개월	연령 도달에 따라서	개월
12		6
16		8
20		10
24		12
30	50세	15
36	55세	18
48	58세	24

(3) Bei Erfüllung der Anwartschaftszeit nach § 142 Absatz 2 beträgt die Dauer des Anspruchs auf Arbeitslosengeld unabhängig vom Lebensalter

nach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n mit einer Dauer von insgesamt mindestens ... Monaten	... Monate
6	3
8	4
10	5

(3) 제142조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형성요건에서 실업급여의 청구기간은 연령에 따르지 않는다.

법정보험관계에 따른 총 기간 개월	개월
6	3
8	4
10	5

Abweichend von Absatz 1 sind nur die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se innerhalb der Rahmenfrist des § 143 zu berücksichtigen.

제1항과 달리 법정보험관계는 단지 제143조의 규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고려된다.

(4) Die Dauer des Anspruchs verlängert sich um die Restdauer des wegen Entstehung eines neuen Anspruchs erloschenen Anspruchs, wenn nach der Entstehung des erloschenen Anspruchs noch nicht fünf Jahre verstrichen sind; sie verlängert sich längstens bis zu der dem Lebensalter der oder des Arbeitslosen zugeordneten Höchstdauer.

(4) 청구기간은 새로운 청구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멸된 청구권의 잔여기간까지 연장된다. 다만, 소멸된 청구권의 발생에 따라서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청구기간은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서 규정된 최장기간까지 연장된다.

<p>Viertes Kapitel Arbeitslosengeld und Insolvenzgeld</p> <p>Erster Abschnitt Arbeitslosengeld Erster Unterabschnitt Regelvoraussetzungen</p> <p>Fünfter Unterabschnitt Minderung des Arbeitslosengeldes, Zusammentreffen des Anspruchs mit sonstigem Einkommen und Ruhen des Anspruchs</p>	<p>제4장 실업보험금 및 도산보조금</p> <p>제1절 실업보험금</p> <p>제5관 실업보험금의 축소, 그 외의 소득 청구권과의 충돌 및 청구권의 정지</p>
<p>§ 155 Anrechnung von Nebeneinkommen</p> <p>(1) Übt die oder der Arbeitslose während einer Zeit, für die ihr oder ihm Arbeitslosengeld zusteht, eine Erwerbstätigkeit im Sinne des § 138 Absatz 3 aus, ist das daraus erzielte Einkommen nach Abzug der Steuern, der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und der Werbungskosten sowie eines Freibetrags in Höhe von 165 Euro in dem Kalendermonat der Ausübung anzurechnen.</p> <p>Handelt es sich um eine selbständige Tätigkeit, eine Tätigkeit als mithelfende Familienangehörige oder mithelfender Familienangehöriger, sind pauschal 30 Prozent der Betriebseinnahmen als Betriebsausgaben abzusetzen, es sei denn, die oder der Arbeitslose weist höhere Betriebsausgaben nach.</p> <p>(2) Hat die oder der Arbeitslose in den letzten 18 Monaten vor der Entstehung des Anspruchs neben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eine Erwerbstätigkeit (§ 138 Absatz 3) mindestens zwölf Monate lang ausgeübt, so bleibt das Einkommen bis zu dem Betrag anrechnungsfrei, der in den letzten zwölf Monaten vor der Entstehung</p> <p>des Anspruchs aus einer Erwerbstätigkeit (§ 138 Absatz 3) durchschnittlich auf den Monat entfällt, mindestens jedoch ein Betrag in Höhe des Freibetrags, der sich nach Absatz 1 ergeben würde.</p>	<p>제155조 부수입의 계산</p> <p>(1) 수급자가 그에게 실업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38조 제3항이 말하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로부터 획득한 소득은 세금, 사회보험 불입금 및 지원비용 및 종사한 역월당 165유로의 비과세액을 공제한 후 계산하여야 한다.</p> <p>이 소득이 자영 활동 및 가족구성원의 보조로서의 활동인 경우, 수급자가 더 과다한 사업장 경비의 지출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장 수입의 30%를 일괄적으로 사업장 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p> <p>(2) 수급자가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 18개월에 보험가입의무관계와 함께 영리활동(제138조 제3항)에 최단 12개월 동안 종사한 경우, 소득은 청구권의 발생전 마지막 12개월에 영리활동(제138조 제3항)으로부터 획득한 평균 월별 금액까지, 그러나 최소한 제1항에 따라 산출될 비과세액의 금액까지 계산에서 제외된다.</p>

<p>(3) Leistungen, die eine Bezieherin oder ein Bezieher von Arbeitslosengeld bei beruflicher Weiterbildung</p> <p>1. vom Arbeitgeber oder dem Träger der Weiterbildung wegen der Teilnahme oder</p> <p>2. auf Grund eines früheren oder bestehenden Arbeitsverhältnisses ohn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für die Zeit der Teilnahme erhält, werden nach Abzug der Steuern, des auf die Arbeitnehmerin oder den Arbeitnehmer entfallenden Anteils der Sozialversicherungsbeiträge und eines Freibetrags von 400 Euro monatlich auf das Arbeitslosengeld angerechnet.</p>	<p>(3)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직업상 추가교육 시</p> <p>1. 사업주 또는 추가교육의 기관으로부터 참가로 인해 또는,</p> <p>2. 이전의 또는 현존하는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일자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참가 하는 기간에 수령하는 급부는 세금, 근로자에게 할당되는 사회보험료입금 및 매월 400유로의 비과세액의 공제 후에 실업보험금에 계산된다.</p>
<p>§ 345b Beitragspflichtige Einnahmen bei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p> <p>Für Personen, die ein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begründen, gilt als beitragspflichtige Einnahme</p> <p>1. (weggefallen)</p> <p>2. in Fällen des § 28a Absatz 1 Nummer 2 und 3 ein Arbeitsentgelt in Höhe der monatlichen Bezugsgröße,</p> <p>3. in Fällen des § 28a Absatz 1 Nummer 4 und 5 ein Arbeitsentgelt in Höhe von 50 Prozent der monatlichen Bezugsgröße.</p> <p>Abweichend von Satz 1 Nummer 2 gilt in Fällen des § 28a Absatz 1 Nummer 2 bis zum Ablauf von einem Kalenderjahr nach dem Jahr der Aufnahme der selbständigen Tätigkeit als beitragspflichtige Einnahme ein Arbeitsentgelt in Höhe von 50 Prozent der monatlichen Bezugsgröße. Dabei ist die Bezugsgröße für das Beitrittsgebiet maßgebend, wenn der Tätigkeitsort im Beitrittsgebiet liegt.</p>	<p>제345b조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에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소득</p> <p>신청에 의하여 법정보험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에게 다음의 경우 보험료 의무를 부담하는 소득으로서 간주된다.</p> <p>1. (삭제)</p> <p>2. 제28a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월수입 총액,</p> <p>3. 제28a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월수입의 50%의 금액.</p> <p>제1문 제2호와 달리, 제28a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자영업활동의 개시 연도 후 그 해의 경과까지 보험료 의무 수입으로서 노동수입은 월간 수입의 50%의 금액이 산정된다. 동시에 활동장소가 가입지역에 존속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가입지역에 따라서 결정된다.</p>

<p>§ 349a Beitragstragung und Beitragszahlung bei einem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p> <p>Personen, die ein Versicherungspflichtverhältnis auf Antrag begründen, tragen die Beiträge allein. Die Beiträge sind an die Bundesagentur zu zahlen. § 24 des Vierten Buches findet keine Anwendung.</p>	<p>제349a조 신청에 의한 법정보험관계에서 보험료 부담과 납부</p> <p>신청에 의하여 법정보험관계가 형성된 자는 보험료를 혼자서 부담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연방노동청에 납부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회법전 제4권 제2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p>
---	---

법제현안분석지원
현안대응 Issue Paper 2-②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1

독일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발행인 이익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044)861-0300 F.044)868-9913

등록번호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859-1 93360

